

서 울 지 방 법 원

제 50 민사부

결 정

사 건 99카합1795 이사회 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

신 청 인 별지 1 기재와 같음

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일은행

대표이사 류 시 열

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신 청 취 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, 별지 2 기재 이사회 결의 중 "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"하는

결의 부분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2 기재 이 사회 결의 중 "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"하는 결의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.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효력정지 부분의 결의를 집행 하여서는 아니된다. 위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신청인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이 유 1. 신청인들이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,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999. 6. 25.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자본금감소명령(이하 "이 사건 처분"이라고 한다)을 내리자,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1999. 6. 26.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 보유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되, 신청인들에게 1주당 금 907원의 가격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(이하 "이 사건 결의"라고 한다)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.

2.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.

가.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금융산업외구조개선에관한법률(이하 "이 사건 법률"이라고 한다) 제12조 제3항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(이하 "정부 등"이라고 한다)가 보유한 주식과 차별하여 일반 주주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무상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위헌이므로,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.

나.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, 이 사건 처분은 정부 등이 보유한 주식과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점과 신청인들 보유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무상소각을 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위 조항을 잘 못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,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 무효이다.

다. 그렇다면,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는 이 사건 결의는 신청인들의 주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,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,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주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,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등을 목적론적 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 다(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5다15735 판결 동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, 자산·부채 평가 결과 부채가 자산을 1조 8,000억원 이상 초과하는 등 은행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피신청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, 금융감 독위원회가 피신청인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에 이르

었고,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한 정부 등의 출자가 없다면 피신청인 회사가 가까운 장래에
파산에 이를 가능성도 큰 점,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의 자산가치
와 수익가치가 0원으로 산정된 점(다만, 피신청인 회사의 시장가치가 금 2,720원으로 평가
되어,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및 시장가치를 합산한 다음 3으로 나눈 가격을 주식의 매수가
격으로 결정하게 되었다),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에 피신청인 회사는 장차 일반 주주의
주식이 무상소각될 수 있음을 수 차례 공시한 점이 각 인정되고, 이 사건 법률에서 정부
등의 출자에 의한 주식과 나머지 주식을 차별하여 무상소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
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하면,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법률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거나 재
량권을 남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.
또한,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
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,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인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되는 이
사건 법률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,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
도 보기 힘들다.

그렇다면,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, 이 사건 처분에 따르지
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정지,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결국 파
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처분 내용에 따른 피신청인 회사
이사회와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.

따라서,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1999. 7. 7.

재판장 판사 박재운

판사 곽병훈

판사 문광섭

별지2

자본금감소 이사회결의

1.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억 6,558만 206주(총 발행주식수의 82.99%)
2. 감자의 방법
 -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: 1주의 금액 5,000원의 주식 5,5127주를 같은 액면의 주식 1주로 병합
 -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 : 전량 무상소각
3. 감자기준일 : 1999. 7. 8.
4.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
 - 구주권 제출기간 : 1999. 6. 29. ~ 1999. 7. 8.(10일간)
 - 주권·제출장소 : (주) 제일은행 본점 및 영업점(단,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)
5.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
 - 주식매수청구기간 : 1999. 6. 29. ~ 1999. 7. 8.(10일간)
 - 주식매수청구장소 : (주) 제일은행 본점 및 영업점(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)
 - 주식매수가격 : 1주당 907원(당행과 회계전문가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당해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임)
 - 주식매수대금 지급개시 예정일 : 99. 7. 12.
6.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- 이의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: 1999. 6. 29. 현재 당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
 - 이의 제출기간 : 1999. 6. 29. ~ 1999. 7. 8.
7. 단주의 처리방법 : 주식의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1주 미만의 단주는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
8. 감자이유 :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금 감소명령에 의함
9. 이사회 결의일 : 1999. 6. 26. -이상-

별지4



자본금감소명령

1.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기존 주식 전부를 병합하여, 동법 제13조의 2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8항에 의거 협의를 위하여 주주에게 제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에 병합주식수(신주 1주로 병합되는 주식수를 말한다)를 곱한 가격이 병합후 신주의 액면가 이상이 되도록 병합비율을 정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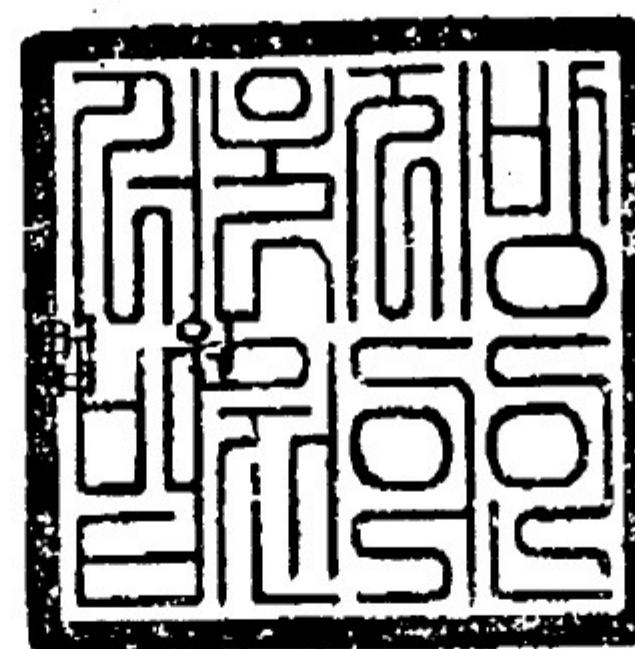
다만,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일부 등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할 것.

2. 이사회는 상기 방법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1999. 6. 28.까지 경의할 것.

-이상-

정본입니다.

서울지방



1999. 7. 07.

법원주사 서정재

